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3030호(2025.04.28)

(유효기간 : 2025.04.28. ~ 2026.04.27)

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예금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에 의거, 은행의 내부 통제절차를 거쳐 예금상품의 주요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입니다.

설명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서명을 하거나 녹취 기록을 남기시는 경우, 추후 해당 내용과 관련한 권리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채널을 통해 가입하거나 통장 미발행 요청 시에는 통장 또는 증서가 교부되지 않습니다.

<u>이 설명서</u>는 은행이용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u>참고자료</u>이며, <u>실제 계약은 본 상품의</u> <u>특약,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이 적용</u>됩니다. <u>계약을 신청하는 경우 약관이,</u> 체결하는 경우 계약서류가 교부됩니다.

1 상품 개요 및 특징

· 상 품 명 : IBK평생주거래기업통장

ㆍ상품특징 : 주거래 이용실적(각종 이체실적 포함) 등에 따라 우대이자율 및 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

공하는 입출식예금

2 거래 조건

☞ 이자율 등 아래의 내용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계약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 실제 계약 내용은 수령하시는 통장이나 증서 또는 비대면 채널의 계좌상세조회에 따릅니다.

(2025.4.29일 현재, 이자율은 세전 기준)

	(2023.4.25일 현재, 이사설은 제한 기문)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 개인사업자 및 법인 ※ 사업자번호별 1개 계좌만 가입 가능
상품유형	● 보통예금,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 단, 저축예금은 개인사업자에 한해 가능
거래방법	 신규 법인: 영업점 개인사업자: 영업점, i-ONE 뱅크(기업), IBK BOX 해지: 영업점, 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기업) ※ 단, 비대면에서 가입한 상품에 한하여 비대면 해지 가능
이자지급시기	• 예금의 이자는 매월 셋째주 일요일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고시이자율과 우대이자율을 적용하여 그 다음날 원금에 더함 ※ 예금의 이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이자에 원금을 더하지 않고, 계좌해지 또는 추가 입출금 거래 발생일에 일괄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 니다.

				_	
구 분	내 용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민사집현에 압류 • 예금잔액환 • 통장이 '전정의한 피장의한 피장의한 피장의한 기업 	방법에 따 금지채권 증명서 불 전기통신 해의심기	범위 변경 신청 등을 <mark>발급 당일</mark> 에는 입금· 금융사기 피해 방지 <mark>H래계좌 및 사기이용</mark>	등 압류금지채권에 해 · 통해 압류를 취소할 출금·이체 등 잔액 및 피해금 환급에 응계좌로 이용될 경우	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수 있습니다. 변동불가 관한 특별법'에서
	지급정지	등의 금	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기본이자율	보통예금		저축 잔액 5천만원 이하	잔액 5천만원 이상	기업자유예금
	연 0.1	I %	연 0.1%	연 0.15%	연 0.1%
	• Group 우	대이자율	<u> </u>		
	내 용	- 연 0.		·)	
	대 상	- 계좌이동서비스를 통해 유입된 신규기업 [*] 과 Group ^{**} 등록을 하는 경 Group내 모든 고객(해당 신규기업 포함)의 이 상품 가입계좌 (단, Group내 모든 고객이 이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 한함) * 이 상품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당행에 최초 기업고객신규 등록을 한 기업 ** Group등록 시 구성 기업에게 'Group등록확인서' 별도 수취			: 가입계좌 L에 한함) I신규 등록을 한 기업
	범 위 - 결산일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매일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우대이자율 제공				
	• 결제자금 우대이자율				
	내 용	- 연 0.5%p(기본이자율 포함)			
우대이자율	대 상	- 전자결제 ^{주1)} 또는 카드매출대금 ^{주2)} 입금실적이 있는 계좌 - 협력업체에게 전자결제로 결제해 준 실적이 있는 계좌			., ,
	범 위	결산일 기준으로 대상요건 충족 시 매일의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잔액에 대해 우대이자율 제공			
	채권으로	발행되어	권, 구매카드, 플러스전자어 결제 결제계좌의 카드매출대금(결	,	
	• 교차판매	우대이기	자율 (아래 기업부금·	에 제공)	
	내 용	- 해당 기업부금의 기본이자율 + 연 0.2%p			
	대 상	- 이 상품 가입일(또는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입하고, 이 통장되리금 자동이체 등록을 한 동일고객의 상호부금** * IBK성공맞춤적금			입하고, 이 통장과 적
	기 타	- 가입	당일은 가입 선/후에 성	상관없이 우대이자 율 지	데공
이자산출근거	• 예금이자는 최종입금일(또는 지난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해당이자율을 적용·계산				

√ 수수료 면제(전월실적 기준으로 당월에 제공)

- 기본면제(개인사업자 대상)
 - 자동이체 이용실적에 따라 우대 제공

대 상	- 전자금융(텔레/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 최초가입 후 익월 말일까지는 조건 없이 면제(최초 전환계좌 포함) - 전월 기준 평잔 충족하고 이체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또는 (평잔요건 충족여부와 무관하게) 이체요건 중 세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구 분 (대상) 개인사업자		
	평 잔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	
조 건	이 체	①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주1)} ② 적립식예금(펀드포함) ^{주2)} 50만원 이상 기일이체 ③ 급여이체 ^{주3)} ④ 아파트관리비 <mark>이체</mark>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건 이상 자동이체	
	평잔요 주1) 지 (주2) 본	대치소실명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고객의 경우에는 가입 후 3개월 간 건 미충족 시에도 면제 가능 가동이체로 출금된 경우만 인정되며, 실시간출금인 경우 인정 불가(출금 방식은 해당 출금 기관으로 문의) 보인명의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도 인정 나구 및 인터넷급여이체실적 포함이며 이 상품에서 출금된 실적만 인정	

수수료면제

• 심화면제(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 상	- 전자금융(텔레/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 10회 제한)				
	공통	- 최초가입 후 익월 말일까지는 조건 없이 면제 (최초 전환계좌 포함)			
		- 전월	기준 기본면제 요건을 충족하고, 심화요건 중 한가지 이상 충족 시		
		구 분	(대상) 개인사업자		
		평 잔	월평잔 일백만원 이상		
조 건 개인	개인 사업자	이 체	①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주1)} ② 적립식예금(펀드포함) ^{주2)} 50만원 이상 기일이체 ③ 급여이체 ^{주3)} ④ 아파트관리비 <mark>이체</mark>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건 이상 자동이 체		
		심 화	① 전자결제 입금 500만원 이상 ② BC카드 매출대금 100만원(합계) 이상 입금 ③ 기업카드 사용금액 ^{주4)} 50만원 이상		
		당 주2) 본 주3) 창	등이체로 출금된 경우만 인정되며, 실시간출금인 경우 인정 불가(출금 방식은 해 출금 기판으로 문의 인명의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도 인정 구 및 인터넷급여이체실적 포함이며 이 상품에서 출금된 실적만 인정 업자별 매출표 접수기준이며 결제계좌가 이 상품인 경우만 인정		

구 분	내 용		
수수료면제	대 상 - 전자금융(텔레/인터넷/스마트뱅킹) 이체수수료 - 타행 자동화기기 출금수수료 (월 10회 제한) 공통 - 최초가입 후 익월 말일까지는 조건 없이 면제 (최초 전환계좌 포함) - 전월 기준 평잔 충족하고 이체/심화요건 구분 없이 두가지 이상 충족 시, 또는 - 이체/심화요건 구분없이 네가지 이상 충족 시 구 분 (대상) 법인 평 잔 일평잔 삼백만원 이상 ① 자동이체(지로, CMS, 펌뱅킹) ^{주1)} ② 적립식예금(펀드포함) ^{주2)} 50만원 이상 기일이체 ③ 급여이체 ^{주3)} ④ 아파트관리비 입금 ⑤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1건 이상 자동이체 집 점자결제 입금 500만원 이상 ② BC카드 매출대금 100만원(함계) 이상 입금 ③ 기업카드 사용금액 ^{주4)} 50만원 이상 주1) 자동이체로 출금된 경우만 인정되며, 실시간출금인 경우 인정 불가(출금 방식은 해당 출금 기관으로 문의) 주2) 본인명의에 한하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개인명의도 인정		
예금자보호여부 	주3) 창구 및 인터넷급여이체실적 포함이며 이 상품에서 출금된 실적만 인정 주4) 사업자별 매출표 접수기준이며 결제계좌가 이 상품인 경우만 인정 해당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 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불가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불가 양도 및 담보 제공 불가		
거래중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입출금, 잔액조회, 이관 등의 거래 제한 (1) 예금잔액이 10,000원미만이며, 1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2) 예금잔액이 10,000원이상 50,000원미만이며, 2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3) 예금잔액이 50,000원이상 100,000원미만이며, 3년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거래를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한 후 가능 		
계약해지방법	• 영업점 및 비대면채널을 통해 해지 가능 (단, 비대면(기업인터넷뱅킹, i-ONE뱅크(기업)에서 가입한 상품에 한해 비대 면에서 해지 가능)		

구 분	내 용
위법계약 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위반 시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소비자가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통지해야하며, 거절 시에는 거절사유와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위법계약해지 요구는 계약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계약 종료 시 행사 불가)
자료열람 요구권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유지·관리하는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제공 또는 청취 포함)을 요구할수 있음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기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은행은 법령, 타인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음
휴면예금 및 출연	 이자지급을 포함한 최종거래일 이후 5년 이내 계좌를 해지하지 않을 경우 예금거래기본약관 제9조의2 휴면예금 및 출연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국번 없이 1397)"에 출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휴면예금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후면예금은 휴면예금통합조회서비스(www.sleepmoney.or.kr)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중복가입제한	• 이 통장은 기업섬김통장, IBK성공의법칙통장, IBK맛집통장 및 이 통장과의 중복가입 제한을 약관에 명시한 상품과 중복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품전환	• 기존 입출금식 계좌에서 이 통장으로 사업자통장에 한해 1회만 상품전환 가능합니다.

3 유의 사항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및 IBK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기 위해 설명을 하기 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서, 상담일 이후 가입금액, 계약기간 등 변경에 의하여 일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관계법령, 약관 등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됩니다.

동 상품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는 거래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주시기 바라오며, 상품가입 후 민원이 있을 경우 거래 영업점, 금융소비자지원부(080-800-0119)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ibk.c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등을 통해 은행에 접수된 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영업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 연장 시 이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처리진행상황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는 본 상품에 대해 당 은행과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록> 예금상품 설명을 위한 관련 용어 안내

용어	설명
압류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에 대하여 처분(매매, 양도 등)을 금지하게 하는 법원의 조치로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해당 재산을 금전화하여 채무 변제에 충당하려는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가압류	■ 법원이 채권자를 위하여 나중에 강제 집행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행위입니다.
질권설정	■ 채무자가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설정자(담보물소유자)가 제공한 담보물에 대하여 채권자가 직접 청구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는 것으로써 일반적으로 담보물이 동산 또는 권리(예·적금, 채권 등)인 경우에 활용됩니다.
출연	 어떤 사람이나 단체가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기부행위를 일컫는 말로 사용되나 법률적으로는 비영리재단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내는 행위를 뜻합니다.
경과기간	■ (해당 시간을) 완전히 지나간 기간 * (예시) 입금일부터 해지일까지 지나간 기간